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0
------	-----

2023.03.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이종환 의원(찬성자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3.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II.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체육국장 김영환)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¹⁾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재정운용 현황

-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시 체육회)와 시체육회의 하부조직(구 체육회)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임의단체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 6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법인화되었음.
- 임의단체의 경우, 법인격의 부재로 재산권 행사 및 공모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법인화를 통해 법적 지위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모사업 참여, 수익시설 운영, 후원지원 확대 등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가능성이 생겼음.

- 하지만 독립법인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여전히 2023년 기준 총 예산 642억 9천4백만원 중 자체예산은 82억 7백만원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가 12.8%에 그치는 등 뚜렷한 재원 안정화 확보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장애인체육회의 경우에도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취약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전히 회장으로 있으며 독립법인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도 추진되지 않는 상황임.

다. 운영비 지원 의무화(안 제18조)

- 안 제18조(지원사업)에서 시장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u>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u>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 현재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2022.8.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이 포함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또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그 밖의 체육단체의 경우, 운영비 의무지원 근거가 없으며, 체육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만이라도 보조하도록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이처럼 법·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서울시를 통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기본경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위탁사업 확대, 수익사업 다각화 등 재정자립도 재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1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기덕,
김원중, 김원태, 남창진,
문성호, 박영한, 아이수루,
, 유정희,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종배,
이효원 의원(16명)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지원) 제1항 중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 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u>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 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u>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